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1996. 4. .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 출 일 자 : 1996년 4월 8일

○회 부 일 자 : 1996년 4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4월 19일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96.4.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관리국장 신 재 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 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 1항의 규정중 "학생의", "교원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임

조례안 제9조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타 법률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각호 사항의 검토가 요구되며,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조례안 제20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에 대한 규정중
단서 규정인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는 자생조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료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1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함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후 학교
위원회 규정이 정하여지는 것으로 볼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에 대한 최초의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본 조례안 규정에 최초의 주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구성시기 및
조례안 제출시기와 현실간의 불부합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질의 1]

조례안 5조(위원의 자격)에 있어 단서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답 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봄

[질의 2]

조례안 7조(위원의 자격상실)에 있어, 자격상실 및 제7조 1호의 "학생의"와
"교원의"의 의미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 변]

퇴직등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법적용어 의미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호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음

[질의 3]

조례안 제14조 (교직원 출석발언)에 있어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답 변]

교감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교직원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교감이 학교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교감을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저야 한다고 봄

[질의 4]

조례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법령상의 모순점이 있어 최초의 규정 주체가 없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철저한 검토를 하여 조례안을 제출치 못한점에 미안하게 생각함
최초의 규정 주체를 부칙조항에 신설하였으면 함

5. 토론요지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다시금 심사

6. 수정안요지 : 별 첨

7.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8. 조례안 : 별 첨

9.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 첨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관한 조례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년 4월 19일

제안자 : 이길하의원외 7인

1. 수정이유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부칙규정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법령상의 모순점이 있는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 주체를 신설하는 등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골자

- 제5조 : 단서규정 삭제
- 제7조 : "(위원의 자격상실)"를 "(위원의 퇴임등)"으로 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를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로 자구수정
- 제7조1호 : "학생의" 및 "교원의"를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및 "교원위원의"로
자구수정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는 자구삽입
- 제7조2호 :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구삽입
- 제9조 : "교원의"의 자구삽입
- 제14조 :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를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로 자구수정
- 부칙 제3조 신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